2022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(장애인복지계정) 운용계획 변경안

의 안 번 호	3212

제출년월일 : 2022년 5월 25일
제 출 자 : 서 울 특 별 시 장

1. 제안이유

가. 2021회계연도 결산 결과 여유자금 예치금이 증액되어 2022년 수입·지출계획이 변경됨

나. 이에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변경내역 : 총 1개 세부사업, 2,989백만원 증액

(단위 : 백만원)

정책사업 / 세부사업	조정내역		
	당초(A)	변경(B)	증감(B-A)
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			
일반예산(재무활동)	3,594	6,583	2,989
여유자금 예치	3,594	6,583	2,989

나. 수입·지출계획 변경내용

〈수입 계획〉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당 초	변 경	증 감
계	9,135	12,124	2,989
이자수입(공공예금)	156	156	0
융자원금회수	1,983	1,983	0
예치금회수	6,795	9,784	2,989
예탁금이자수입	201	201	0

〈지출 계획〉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당 초	변 경	증 감
계	9,135	12,124	2,989
사회복지사업보조	700	700	0
민간융자금	4,800	4,800	0
일반운영비	41	41	0
예 치 금	3,594	6,583	2,989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○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
>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　　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　　타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정책팀 김경민 (☎ 2133-7447)